

※ 제출서류

1.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
2.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
3.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4. 민간환경조사 예산 산출 내역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6. 최근 3년('23~'25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각 1부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9. 전문가 이력서 및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10.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1.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 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2. 사업 대상지 사용 허가(매매, 임차 등)와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13. 현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1. 2. 3. 4. : 공고문 내 붙임2(zip) 양식 참고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공고 마감일 기준 최신 버전 제출

6. 최근 3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 2023년, 2024년, 2025년 제출

* '25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불가 상황인 경우 같은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7.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출

8.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공고 마감일 기준 최신 버전 제출

9. 전문가 이력서 및 경력증빙서류

- 이력서의 내용에 있는 경력·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포함 (ex 자격증, 학위증, 기업의 경력증명서 등)

10.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 공문

11.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 용자 지원 확인서

12. 사업 대상지 사용 허가(매매, 임차 등)와 관련된 서류 (원본 + 번역본)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 임차·매매계약서 또는 합작합의서, MOU 등을 통해 특정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증빙서류

13. 현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 (원본 + 번역본)

- 해외 농장의 개발·영농·가공 기타 부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 설립 등본 또는 합작계약서 또는 사업 진출 대상국의 사업계획 승인·투자 허가서 등